

[별표 20]

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(제63조 관련)

용지매수의 금 액 별	위탁수수료의 기준 (용지매수대금에 대한 백분율)	비 고
10억원 이하	2.0퍼센트 이내	1. “용지매수의 금액”이란 용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, 관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. 3.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, 지목변경,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. 4.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.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.7퍼센트 이내	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3퍼센트 이내	
50억원 초과	1.0퍼센트 이내	